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등록번호 : 20090100003
최초 등록일 : 2009. 01. 07
최종 등록일 : 2024. . .

www.kage.co.kr
kage_fc@kage.kr

KAGE영재심화교실

정 보 공 개 서

한국영재교육학술원 주식회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한국영재교육학술원 주식회사]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1길 3 사보이빌딩 6층

전화. 02-2149-5600

팩스. 02-2149-5505

직통. 02-2149-5600 (가맹개설담당자)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한국영재 교육학술원 주식회사	KAGE영재심화교실 외2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1길 3, 6층(역삼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7.7.3	2017.7.1	조성식	02-2149-5600	02-2149-5505
	법인등록번호	110111-6449527	사업자등록번호	461-87-00695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 관계인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조성식	KAGE영재심화 교실 외2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1길 3, 6층(역삼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조성식	02-2149-5600	02-2149-550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등기감사 (비상근)	신미자	KAGE영재심화 교실 외2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1길 3, 6층(역삼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조성식	02-2149-5600	02-2149-5505
계열회사	(주)밤비니 교육센터	밤비니 교육센터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121(한남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조성식	02-319-0579	02-792-0597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경영권 양수도에 따라 주주변경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KAGE영재심화교실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KAGE영재심화교실	Korea Academy of Gifted Education
상 호	KAGE영재심화 OO교실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4004106360000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②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2,811,147	1,451,988	1,359,159	5,318,523	1,102,821	1,026,423
2022년	4,161,544	1,300,462	2,861,081	6,335,033	1,860,731	1,501,922
2023년	5,133,308	1,098,278	4,035,030	5,893,513	1,326,445	1,173,948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조성식	대표이사	2021.4.~현재	한국영재교육학술원 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신미자	감사	2020.3.~현재	한국영재교육학술원 주식회사 감사	등기감사 (비상근)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1	6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한국영재 교육학술원 주식회사	가맹사업 경영	1996.7~현재	KAGE영재교육학술원·연 구실(등록번호: 20090100014)이라는 영업표지의 교육사업 경영
			2014.9~현재	idea Tree창의교육센터 (등록번호:20140929)라는 브랜드의 교육사업 경영
특수 관계인	(주)밤비니 교육센터	유사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2008.1.8~현재	밤비니교육센터(등록번호:2 0090100017)라는 브랜드의 교육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②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③)
KAGE (상표권)	가맹본부의 허락을 득해서 사용가능	2009.01.23 등록	등록 제4500262120000	한국영재 교육학술원 주식회사	2029.01.23
	가맹본부의 허락을 득해서 사용가능	1998.07.16 등록	등록 제4004106360000	한국영재 교육학술원 주식회사	2028.07.16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KAGE영재심화교실 가맹사업 현황

1. KAGE영재심화교실을 시작한 날: 1995년 1월 11일

2. KAGE영재심화교실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러닝 주식회사	KAGE영재 심화교실	이준식	2008.12~2010.12	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206-4
지러닝 주식회사	KAGE영재 심화교실	조성식	2010.12~2014.3	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206-4
에듀컴퍼니 주식회사	KAGE영재 심화교실	조성식	2014.3~2014.10	서울시 서초구 매현로8길 39 (양재동, 회경재단빌딩 디동 4층)
주식회사 판타지오	KAGE영재 심화교실	조성식, 나병준	2014.10~2016.12	서울시 서초구 매현로8길 39 (양재동, 회경재단빌딩 디동 4층)
주식회사 판타지오	KAGE영재 심화교실	위이지에, 나병준	2016.12~2017.7	서울시 서초구 매현로8길 39 (양재동, 회경재단빌딩 디동 4층)
한국영재 교육학술원 주식회사	KAGE영재 심화교실	조성식	2017.7~2017.8	서울시 서초구 매현로8길 39 (양재동, 회경재단빌딩 디동 4층)
한국영재 교육학술원 주식회사	KAGE영재 심화교실	조현식	2017.8~2021.4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81길 3, 6층(역삼동)
한국영재 교육학술원 주식회사	KAGE영재 심화교실	조성식	2021.4~현재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81길 3, 6층(역삼동)

3. KAGE영재심화교실 업종

영업표지	업종	
KAGE영재심화교실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 교육	영재교육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KAGE영재심화교실 가맹점 및 직영점
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20	20	-	24	24	-	28	28	-
서울	3	3	-	3	3	-	3	3	-
부산	7	7	-	7	7	-	7	7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2	2	-	2	2	-	2	2	-
경기	4	4	-	5	5	-	6	6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2	2	-	5	5	-
전북	-	-	-	-	-	-	-	-	-
전남	1	1	-	2	2	-	2	2	-
경북	-	-	-	-	-	-	-	-	-
경남	3	3	-	3	3	-	3	3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KAGE영재심화교실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19	3	2	-	-	20
2022	20	4	-	-	-	24
2023	24	5	1	-	-	28

KAGE영재심화교실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2]를 확인하십시오

6. KAGE영재심화교실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KAGE영재심화교실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최근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한국영재 교육학술원 주식회사	KAGE영재 교육학술원 ·연구실	20090100014	문화센터, 사회복지교육	15/2	15/2	16/2
가맹본부	한국영재 교육학술원 주식회사	ideaTree창 의교육센터	20140929	문화센터, 사회복지교육	6/0	6/0	6/0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밤비니 교육센터	밤비니 Bambini	20090100017	학원업	1/0	1/0	1/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KAGE영재심화교실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28	21,171	-	54,400	-	680	-	15곳 적용
서울	3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부산	7	21,896	-	33,320	-	6,120	-	5곳 적용
대구	-	해당없음	-	-	-	-	-	-
인천	-	해당없음	-	-	-	-	-	-
광주	-	해당없음	-	-	-	-	-	-
대전	-	해당없음	-	-	-	-	-	-
울산	2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세종	-	해당없음	-	-	-	-	-	-
경기	6	8,160	-	8,160	-	8,160	-	1곳 적용
강원	-	해당없음	-	-	-	-	-	-
충북	-	해당없음	-	-	-	-	-	-
충남	5	24,480	-	24,480	-	24,480	-	1곳 적용
전북	-	해당없음	-	-	-	-	-	-
전남	2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북	-	해당없음	-	-	-	-	-	-
경남	3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제주	-	해당없음	-	-	-	-	-	-

※ 면적 3.3㎡당 평균 매출액 미표시 : 교재공급형태 가맹으로 가맹원별 면적 산정 어려움.

※ 전체 가맹원 중 매출 미발생 10곳, 6개월 미만 3곳을 제외한 15곳에 대한 매출산정 자료.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매출액 = {(월회비 X 교재 총판매수 X 3개월)

+ (교재비 X 교재 총판매수)} ÷ (운영가맹점수)

수강료 : 지역별 편차 및 수강료를 고려하여 100,000원~200,000원 산정

KAGE영재심화교실 가맹사업에서 매출액산정은 가맹심화교실에 공급되는 교재 판매현황을 통해서 학생인원을 추정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KAGE영재심화교실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KAGE영재심화교실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28	3,819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KAGE영재심화교실 가맹점 관리를 위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KAGE영재심화교실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내역은 없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31쪽을 참고하십시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나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하나은행	신사업추진부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01-1	1599-1114 (에스크로 대표전화)

귀하께서는 가맹비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1일 이내에 하나은행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방법>

1. 하나은행 에스크로 사이트(www.hanaescrow.com)의 접속 후 화면에서 조회센터 클릭 → "프랜차이즈 B2B" 선택.
2. 로그인 화면에서 "주민/사업자번호"란에 입력 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단, 로그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사전등록을 했는지 확인)
3. 로그인 된 경우 → 가맹본부명 클릭.
4. 가맹점 사업자의 일반정보를 입력하고, 하단의 약관 동의를 하고 "등록"을 클릭.
5. 가맹금 입금 계좌번호 및 예치할 가맹금 확인
6. 가맹점 사업자 에스크로 가입완료
7. 가맹금 입금 계좌번호로 가맹금 입금(예치) → 완료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일자	조치내용
해당없음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	피고	사건번호	최종 법원명	판결(선고)일자	청구 취지 및 내용	판결 또는 화해 내용
해당없음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	사건번호	선고 법원	선고 일자	죄명 및 범죄사실	선고 내용
해당없음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KAGE영재심화교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최초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최초 공급 상품 비용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A타입	2,200	-	-	-	-
	B타입	없음				
가맹비	A타입	2,200	계약 체결일로부터 1일이내에 하나은행 영업점에 예치	반환되지 않음	가맹사업 개시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제의 경우 반환시 가맹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계약을 위한 출장비 등 영업실비를 공제 후 지급
	B타입	없음	-	-	-	-
최초 교육비	A타입	없음	-	-	-	-
	B타입	없음	-	-	-	-

※ 타입의 구분

▶ A타입: KAGE영재심화학원

- KAGE영재심화학원 인허가/설립 및 외부간판을 포함한 로고씰팅 및 내부 인테리어, 각종 홍보 등을 가맹본부가 지정한 BI 및 디자인컨셉을 지켜 운영하여야 하는 곳

▶ B타입: KAGE영재심화(컨텐츠공급형)

- 현재 학원을 운영하는 곳에서 가맹본부로부터 허가받은 교육프로그램을 공급받아 교육을 운영하는 곳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1,000			
지급보증금	1,000	계약 체결일로부터 1일 이내에 하나은행 영업점에 예치	가맹본부가 공급한 물품 및 서비스 대가 미지급, 물품 파손 등	인테리어 비용, 기자재 및 설비 구입비, 교구재 구입비, 기타 상품(서식류, 가방 등), 교사 알선, 교육비, 홍보비 등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를 위하여 제공하거나 선지급금에 대한 지급 담보금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A타입	합계	3,200
	가입비	2,200
	보증금	1,000
B타입	합계	1,000
	가입비	-
	보증금	1,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21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비고
총계	-	60,900~165,900	-	-	-	-
최초 공급 상품 비용	A타입	한국영재 교육학술원	없음	-	-	-
	B타입	주식회사	900	-	-	교재,과학물품, 검사도구, 본사구매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인테리어 시공사	45,000~135,000	1,000~ 3,000	-	-	148㎡ 기준, 개별구매
일반물품 및 교구	-	10,000~20,000	-	주문 시	-	컴퓨터,사무기기,책 상,의자의외,개별구매
홍보	-	5,000~10,000	-	-	-	설명회, 현수막, 전단지, 개별구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교육사업단 (전화:02-2149-5600)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1.초대졸로서 교육사업 경험자 2.각 지역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1.현재 유아관련 교육업체(학원) 운영자 2.사업자의 교육이념과 운영방침이 당사와 부합되는 자 3.성 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 없는 자
교사	1.교사자격증 소지자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포함) 2.초대졸자로서 유아교육 경험자 3.각 지역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1.성 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 없는 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KAGE영재심화교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한국영재 교육학술원 주식회사					
프로그램 워크샵	한국영재 교육학술원 주식회사	56	교육실시 10일 이전	교육시작 1일 이전 취소시	대관 및 강사 비용 발생	1인기준, 분기당1회
광고분담금	한국영재 교육학술원 주식회사	총 운영점 동일부담	최종분담금 공지이후 10일 이내	반환되지 않음	전국 단위 광고 및 행사에 사용	총 가맹점 80%이상 동의시에만 중앙홍보
교육훈련비	한국영재 교육학술원 주식회사	55~330	교육실시 10일 이전	교육시작 1일 이전 취소시		교육 필요시 지급

상기 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는 없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은 자체제작(출력물 인쇄만 외

부제작)으로 해당사항 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계약을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할 경우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다만, 예치보증금 금 일백만원(1,000,000)은 기 예치된 보증금으로 대체하며, 만약 재계약 체결일 현재 기 예치된 보증금 금 일백만원(1,000,000)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되는 금액을 재계약 체결과 동시에 가맹 본부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

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KAGE영재심화교실 운영권을 가맹본부의 서면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새로운 양수인은 귀하의 잔존계약기간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신규가맹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9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KAGE영재심화교실 영업표지를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지해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계약 종료 즉시 당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모든 집기, 고유한 교육프로그램, 교육과 세미나 자료 및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 일체를 당사가 지정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가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 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한해 반품이 가능하며, 제품상태, 수량, 일정,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KAGE영재심화교실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KAGE영재심화교실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KAGE영재심화교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

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KAGE영재심화교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KAGE영재심화교재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교육할 경우 KAGE영재심화교재와 분리하여 교육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상황에 따라 기재된 상품·용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당사 동종업체·동종업체 종사원 및 기타 당사와 경쟁하는 업체	당사와 관련된 일체의 상품·제품 및 용역	당사와 관련된 일체의 상품·제품 및 용역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

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KAGE영재심화교재	80,000	변경시 개별통지	3개월 기준
교육비	100,000~200,000	변경시 개별통지	1개월 기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유아 대상 영재교육을 하는 가맹사업	KAGE영재심화교실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법정동 단위당 1점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KAGE영채심화교실'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KAGE영재심화교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포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해당없음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KAGE영재심화교실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서상의 가맹비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조 2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20조 2항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학원 · 설비 · 강사진 등 인력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 면허 · 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조 2항
○ 교육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조 2항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조 2항
○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조 2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 실적이 가맹점 평균실적보다 현저히 저조하고 추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본사가 판단한 경우	21조 1항
○ 영업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영업을 하거나 자체홍보를 하는 경우	21조 1항
○ 가맹계약서 상의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	21조 1항
○ 가맹계약서상의 가맹비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조 2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20조 2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 ·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 면허 · 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20조 2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20조 2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0조 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	21조 2항

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21조 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1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21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21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21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21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21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21조 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와 서면 합의하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본사와 가맹점은 계약서에서 규정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상호 서면 합의로써 하여야 한다.	제26조
○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가맹계약 체결시 계약서에서 규정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상호 서면 합의로써 하여야 한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단, 계약만료에 따른 재가맹계약 체결시에는 7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 · 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교육사업단 (02-2149-5600)

귀하가 운영하는 KAGE영재심화교실 운영권을 당사의 서면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새로운 양수인은 귀하의 잔존계약기간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신규가맹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신규가맹에 준하는 교육, 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위탁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 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승인	단, 상속인이 가맹점 운영조건에 위배될 시 가맹계약 해지가 가능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 및 국외지역 내에서 귀하가 KAGE영재심화교실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의 서면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영·유아 및 초등을 대상으로 관별검사를 통한 교육 ○ 창의사고력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 동일과목을 지도하는 교육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교육사업단 (02-2149-5600)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KAGE영재심화교실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9:00 ~ 22:00 (13시간)	일요일, 공휴일 제외 영업	문의: 교육사업단 (02-2149-5600)

상기 영업시간 또는 영업일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을 원하는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최소 3명 이상 (교사 2인 이상)	직접 근무	원장, 부원장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KAGE영재심화교실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광고 전체 행사	분담액=총 소요비용/(총 직영점 수+총 가맹점 수)		홍보 계획 공고 → 가맹점 부담액 제시 → 가맹점(직영점 포함) 80%이상 동의 → 최종 분담금 확정	전국 단위 전체 행사 및 대중매체 광고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 홍보를 하기 위해 본사의 로고나 상호가 들어간 판촉물을 제작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본사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자체홍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자체홍보는 가맹점이 계약된 영업지역 내에서만 행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비밀은 한국특허정보원의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공급하는 교육프로그램, 교사메뉴얼 등 교육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유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공급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무단 복사하여 교육지도를 할 경우 상표법,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해 당사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4) 계약 당사자(임원 포함)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40~44	본사내방
사업체 점검	- 기존 사업체(유아관련학원) 시장성 및 시설 점검	D-35~39	
최종 협의	- 본사개설기안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30~34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6~30	본사내방
가맹금 예치	- 하나은행에 가맹금 예치	D-26~30	A타입:3,200 B타입:1,000
교육	- 가맹점 운영교육 실시 - 가맹점 실무교육 실시 - 교사 프로그램 교육	D-10~25	본사내방 교육
최종점검	- 시설점검	D-9~5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1.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비용 항목	1. 간판 교체 비용 2.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비용 비율	1.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 환경개선 : 20% 2.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지 급 절 차	1.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2.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3. 분할 지급 시 절차 ①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②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4.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비용부담 제외 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가맹본부는 판매촉진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촉진행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가맹본부는 경영활동 자문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KAGE영재심화교실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KAGE영재심화교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KAGE영재심화교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기본 교육	1일	없음	필수교육
프로그램 교육	4일	없음	동영상 제공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프로그램 및 정기 교육은 가맹계약서 11조에 의해 본사로 서면 통지 및 본사에서 인정한 자에 한하여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21조에 따라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정기 교육(교사 재교육)은 가맹계약서 11조에 따라 본사가 사전 공지한 기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서면경고 및 시정권고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교육사업단(02-2149-560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뒤 쪽)

예치기관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본 가맹금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의 예치일 부터 7일 이내에 이 증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별지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지2]

KAGE영재심화교실 현황

2023년 12월 31일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지3]

KAGE영재심화교실 초기물품 목록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지4]

KAGE영재심화교실 교재목록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지5]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희망자용

정보공개서 제공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확인서

■ 정보공개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	한국영재교육학술원 주식회사	영업표지	케이에이지이영재심화교실
제공확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습니다.”라고 작성합니다.		
	작성해주세요 ⇒		
제공일시	년 월 일	제공받은 장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No.	지역	상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현황을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현황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 _____서명 또는 (인)

가맹희망자: 성명 _____서명 또는 (인)

[별지6]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본부용

정보공개서 제공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확인서

■ 정보공개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	한국영재교육학술원 주식회사	영업표지	케이에이지이영재심화교실
제공확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습니다.”라고 작성합니다.		
	작성해주세요 ⇒		
제공일시	년 월 일	제공받은 장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No.	지역	상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현황을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현황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 _____서명 또는 (인)

가맹희망자: 성명 _____서명 또는 (인)